

任幹部 紹介를 한 후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委員長님 이하 여러 委員님들의 아낌 없는 指導에 힘입어서 지난 12月 7日字 清掃事業本部長으로 任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本部 모든 職員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당면한 서울시 쓰레기 處理問題를 슬기롭게 解決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指導와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豫算審議時에 身病으로 인해서 제가 參席하지 못 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提案說明에 앞서서 지난 12月 13日字 서울시 人事異動에 따른 저희 本部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李惠洙 施設計劃部長이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 施設管理部長으로 轉補되고 그 자리에 銅雀區 建設局長으로 勤務하던 李採根 部長이 새로 赴任했습니다.

(幹部紹介:施設計劃部長 李採根)

그러면 첫째 案件인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敏國 委員長님, 그리고 生活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따뜻한 愛情으로 清掃行政의 發展을 위해 보내 주시는 關心과 聲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上程된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94年 4月 1일부터 示範實施해 오던 쓰레기 從量制가 政府 方針에 의하여 95年 1月 1일부터 全國적으로 施行됨에 따라 우리 市에서도 全面施行에 필요한 制度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를 整備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上程된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建築物의 財産稅額, 事業場 面積, 부피로 구분하여 手數料를 賦課徵收하는 制度가 規格봉투 販賣制度로 變更 施行하게 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規定들을 정비하면서 從量制 除外對象 廢棄物에 中전에 煉炭재, 再活用品 외에 多量廢棄物, 多量排出 一般廢棄物, 建築物廢材類, 大型 生活廢棄物을 포함하였고,

둘째, 一般廢棄物 代行業者가 販賣할 規格봉투의 種類 및 價格과 手數料 減免基準, 規格봉투 販賣方法 등도 自治區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從量制 실시에 따른 家庭 및 事業場 廢棄物에 대한 手數料 및 處理費의 納期, 加算金 減免 規定 등을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內容은 별도 배부해 드린 新·舊條文 對比表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條例 改正案은 手數料 賦課 徵收制度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事項으로서 금번 會期中에 改正되어 95年 1月 1일부터 이 制度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  
(報告)

1994年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1994年 4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해오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1995年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 그 동안 시범 실시해 온 관련조항은 삭제하는 등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p>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품목인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외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대형 생활폐기물은 수수료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임.(안 제14조)</p> <p>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종량제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납기 감면기준 등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안 제15조)</p> <p>종량제 실시로 사업장 폐기물 중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의 구분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삭제한 것임.(안 제2조제2호)</p> <p>종량제 실시로 가정 및 사업장의 수수료 납기 삭제.</p> <p>종량제 시범실시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19조, 제21조 내지 24조)</p> <p>3. 관련근거 법령</p> <p>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환경처 지침.</p> <p>4. 검토의견</p> <p>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과 대비해 볼 때 '9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되는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규격봉투의 가격인 수수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조례에 규정하였고, 종량제 실시로 가정 및 사업장의 수수료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음.</p> <p>현행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적용하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였고, 종량제 제외대상 품목인 다량폐기물 및 건축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경우, 수수료의 기준은 그 지역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p> <p>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규격봉투의 제작 및 공급기준, 규격봉투의 종류, 색깔 등은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p>	<p>종량제 실시로 종량제 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가 같은 용량이라도 각 자치구별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이미 보도된 바 있고, 현행 재산세액기준과 대비해서 가구별로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수수료의 처리비의 부과기준, 냉장고 등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p> <p>앞으로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재산세액기준에서 규격봉투 매입가격으로 대체되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유사봉투 또는 봉투의 공급상의 문제, 재활용품을 빙자한 일반쓰레기의 무단배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주택가의 홍보부족과 재활용 대상종류의 분류, 수거일자, 품목별 중간집하장 미설치 등으로 분리수거 체계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199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에도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명시만되어 있을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거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종량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므로 수수료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이번 개정조례의 중요성은 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lt;별표 1&gt;</p> <p>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수수료 (제19조제1항제1호 관련)</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第12回—生活環境第5次)

종 별		부 과 기 준	비 고
다 량 폐기물	일반다량	㎡당 5,100	·쌍방 합의하에 요율의 10% 범위안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
	오니케일등	톤당 6,800	
건축물폐재류		㎡당 10,000	·쌍방 합의하에 요율의 20% 범위안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

비고 : 1. 오니케일 등이라 함은 하나의 배출처에서 단일성상으로 다량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발생단계부터 무게의 비중치가 높아 부피로 환산함이 부적당하고 일반쓰레기와 완전 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2.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냉 장 고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3,000	
에 어 콘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 스 오븐 렌 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능	120cm 1쪽	15,000	
	90cm 1쪽	10,0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서 략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2,000	
문 감		3,000	
화 장 대		3,000	
장 식 장		4,000	
응 접 세 트	장의자	5,000	
	의 자	2,000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4,000	
화 일 캐 비 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양 수 책 상		7,000	
편 수 책 상		4,000	
피 아 노		15,000	
울 겐		4,000	

비고 :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委員 權赫柱委員입니다.

이제 10餘 日밖에 남지 않은 95年 1月 1日부터 全面施行되는 쓰레기 手數料 從量制의 성공적인 實施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

로 官給 규격봉투가 適期에 供給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試行錯誤의 規格봉투의 假需要 현상을 감안하여 충분한 所要量이 이미 指定 販賣所에 供給되어 있어야 하는데 市內 住宅街 및 아파트團地 등에는 아직도 手數料 從量制가 실시된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規格봉투의 販賣場所와 봉투의 所要量은 충분히 確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4月 1日부터 쓰레기 手數料 從量制를 示範